붙임 1.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 규정 제 3장

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4. 3. 25 규정 제51호
일부개정 2016. 3. 21 규정 제86호

제3장 입주예술가의 센터 사용 등

제12조(입주 절차)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주예술가는 센터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를 체결하고, 센터에서 정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한다.

제13조(이용 의무) ① 입주예술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주 3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. 단, 해외여행 및 전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최소 10일 전 센터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대표이사는 입주예술가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거쳐 퇴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용료 부담) ① 입주예술가는 센터 시설 이용 및 운영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. 다만,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는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② 센터 입주 및 퇴실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예술가 본인이 부담한다.
③ 센터의 허가를 받아 개인 작업실의 내부 시설물을 변형 및 변경할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예술가 본인이 부담한다. 단, 퇴실 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.

제15조(작업실 개방) 센터 방문객에게 센터 홍보 등을 위해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센터는 입주예술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.

제16조(전시실 사용) ① 입주예술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시실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사전 심의 및 허가 후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21>

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, 전시작품 등의 도난·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안전상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.<개정 2016.3.21.>

제17조(준수사항) 입주예술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센터의 시설을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
3. 본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센터의 허가 없이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거나 거주 또는 숙박할 수 없다.
4. 본인의 방문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5. 센터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.
6. 센터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7. 센터 내의 모든 시설, 장비,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.<개정2016.3.21>
8. 센터에서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·난방 기구,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,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9.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.
10.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.
11. 창작활동 시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3.21>
12.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한다.<개정 2016.3.21.>

제18조(기록 및 자료이용) ① 센터는 입주 기간 동안 입주예술가의 창작활동과정 및 그 결과물을 사진, 영상 등으로 기록할 수 있다.

② 입주예술가는 퇴실 전 센터의 요청 기간 안에 입주 기간 동안의 활동성과 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센터 임의로 홍보물 제작, 웹사이트

게재, 언론 배포 등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21>
④ 센터의 창작지원금으로 제작된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입주예술가의 개인 도록 및 홍보물 등에 활용할 경우, 입주예술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 센터의 지원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.<개정 2016.3.21>
1. 센터 로고
2. 창작지원금 지원 문구

제19조(퇴실) ① 입주예술가는 입주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.
② 입주예술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.
③ 입주예술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, 입주예술가의 활동이 창작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대표이사는 입주예술가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퇴실 명령은 최소 1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, 입주예술가가 퇴실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.
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퇴실 조치를 당한 경우, 입주예술가는 센터의 입주 경력을 사용할 수 없다.

제20조(계약 해지) ① 입주예술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예술가와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
2. 활동 내용이 창작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
3.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간 사용이 불가능 할 때
4. 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
5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<개정 2016.3.21>
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시,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주예술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21조(배상책임) ① 입주예술가가 센터 내의 모든 시설, 장비,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1>
② 입주예술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에 따른

화재의 경우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③ 입주예술가는 시설물 사용 시 참가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, 입주기간 중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예술가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센터와 입주예술가가 책임 한계를 협의 및 결정한다.
④ 재단은 입주 기간 중 입주예술가의 개인 상해, 전시 작품 훼손 등과 관련된 보험 가입 및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으며,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입주예술가가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3.21>